

---

第53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運營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2年3月4日(水) 午前11時

場所 運營委員會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
  2.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
  3.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
  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審査된案件

○ 報告事項 ... 2面

1.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 ... 2面
  2.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 ... 4面
  3.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 ... 5面
  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 6面
  5.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 6面
  6.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 6面
- 

(11時 15分 開議)

○委員長 金寅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

있으므로 第53回 臨時會 第2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o 報告事項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먼저 報告事項이 있습니다.

○崔泰成;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年 2月 24日字로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案과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이 議長으로부터 위 3件에 대한 規程案을 審議해 주도록 當 運營委員會에 回附되어 왔습니다.

1992年 3月 4日字로 林東奎 委員님 외 1人的 發議로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查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的 同意件이 當 運營委員會에 接受되어 오늘 議事日程에 上程하게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

(11時 17分)

○委員長 金寅東; 委員 여러분!公私多忙하신데 이렇게 會議에 참석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조금 전 報告事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上程된 案件은 市議會傍聽規程案 等 規程制定案 3件과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 等 改正條例案 審查 3件을 處理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深度있는 審查가 될 수 있도록 委員님 여러

분께서 協助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議事日程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議長으로부터 審議要請한 本 案件에 대한 檢討報告를 專門委員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와 討論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 討論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案의 件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傍聽規程

(뒤에 실음)

.....

---

2.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

(11時 20分)

○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本 案件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 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案을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會議錄發刊및保存等에關한規程

(뒤에 실음)

---

### 3.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

(11時 23分)

○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 檢討報告

(뒤에 실음)

以上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었습니다.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質疑討論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文晉 委員; 專門委員의 制定理由와 主要骨子와 檢討意見を 보니까 상당히 合理的이고 妥當性이 있다고 생각해서 異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質疑討論이 없으시기 때문에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案

에 대하여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에서의證人等費用支給에關한規程

(뒤에 실음)

.....

---

4.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5.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6.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林東奎 議員 外 1人 發議)

(11時 27分)

○委員長 金寅東; 議事日程 第4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議事日程 第4項, 5項, 6項은 審査할 案件의 內容이 간단하므로 一括 上程하여 處理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면 一括 上程해서 處理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議

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다음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提案하신 金箕英 委員님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箕英 委員; 안녕하십니까? 民主黨 金箕英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이 改正條例案은 地方自治法 第82條 및 第84條가 지난 91年 12月 31日字로 議會事務局이 議會事務處로 명칭이 變更되어 同 條例의 內容 中 事務局을 事務處로, 事務局長을 事務處長으로 名稱을 變更하고자 改正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을 參照해 주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提案하신 廉東秀 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廉東秀 委員; 안녕하십니까? 廉東秀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드리겠습니다. 이 條例는 地方自治法 第32條 및 同法施行令 第15條의 內容 일부가 改正됨에 따라 同法 및 施行令에 맞게 同 條例의 內容 일부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條例의 내용을 要約하면 議員이 會期 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出席한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하는 때 旅費를 支給하고, 議員이 會期 中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參席한 때는 別표1의 現地交通費 全額, 즉 1日에 4,500원의 旅費를 會期가 끝나는 날 支

給하도록 同 條例의 내용을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油印物を 參照하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廉東秀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林東奎 委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東奎 委員; 안녕하세요? 民自黨 所屬 林東奎 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同意件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本 條例를 改正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91年 12月 29日字로 內務部에서 서울시議會에 事務處職員 8名을 增員하도록 이미 承認을 해서 通報해 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內務部の 承認通報事項을 根據로 해서 事務處職制를 改正, 職員을 確保하고, 이에 따른 字句修正 등을 하고자 市議會會議規則 第53條 規定에 의거 運營委員會 發議로 改正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主要骨子は 첫째, 特委를 擔當할 專門委員 4級 1名과 市議會 弘報를 專擔할 弘報室長 等 5級 3名과 6級 이하 職員 4名 等 總 8名을 增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議政課, 議事課로 되어 있는 課 名稱을 議政擔當官, 議事擔當官으로 名稱을 變更해서 議政活動을 專擔하는 部署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두번째입니다.

以上으로 提案說明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を 參考하여 주시고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林東奎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이 지금 전부 提案說明을 해 주신 세 件에 대해서 일괄해서 檢討報告를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梁在大; 먼저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改正理由,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히 言及이 있었기 때문에 檢討意見만 말씀드리겠습니다. 上位법인 地方自治法 第82條의 改正에 따라 關聯條例의 用語와 字句修正 등 條文整理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思料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改正理由 및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 자세히 言及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檢討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定期議會에서 地方自治法 第32條가 改正되어 地方議會 議員이 公務上으로 여행할 때뿐만 아니라 會期中 本會議 또는 常任委員會에 出席할 때에도 旅費를 支給할 수 있는 根據規定이 마련되었고, 同法施行令이 改正 92年 2月 15日 公布되어 第15條에서 그 支給基準을 大統領이 정한 地方議會 議員 國內外的 旅費支給 범위 내에서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財政能力을 감안하여 條例로 정하도록 委任함에 따라 關聯條項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思料됩니다. 단, 地方自治法 第53條도 改正되어 閉會 中에도 委員會가 開會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 경우에 會期로 인정하여 旅費支給이 가능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制度的 뒷받침을 위해 긍정적인 檢討가 필요하다고 思料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提案理由와 主要骨子は 提案說明에서 자세한 言及이 있었기 때문에 檢討意見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政活動의 效率的인 補佐와 能率的인 事務處理를 위해서는 事務處機構 및 人的資源이 적절하고 짜임새있게 편제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改正案의 경우 特別委員會를 專擔하여 補佐할 豫決委 專門委員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思料되나, 專門委員의 역할 및 事務와 관련하여 보면 人력의 效率的 活用이라는 관점에서 特委補佐의 경우 여타 專門委員이 겸직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며, 더 시급한 것은 專門委員을 補佐할 적정한 數의 人원이라고 보는데 현재 事務處設置條例가 改正된 지 2個月이 지난 시점인데도 專門委員 傘下에 人원배치를 하지 않고 있어 專門委員들이 事務遂行에 막대한 隘路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議政活動에 대해 積極的·體系的으로 弘報하고 圖書館 기능을 活性化시키기 위해 公報室을 신설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나 公報官의 職級이 3級인 執行部와의 均衡관계 유지와 涉外活動 및 서울市議會의 위상 등을 감안하여 보면 現在 5級인 公報擔當의 職級이 낮다고 判斷되는바, 향후 上향조정이 필요하다고 思料됩니다. 지적인 시기에 議會運營의 活性化를 위해 議會運營制度改善特委 또는 運營委員會 傘下에 議會運營制度改善小委 등을 構成하여 國會 또는 先進國 地方議會 모델을 도입하여 현 서울市議會의 機構, 制度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도 檢討해볼만 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寅東; 委員님들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質疑와 討論을 하실 委員 있으시면 質疑와 討論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지금 職員增員이 5級 行政이 3名이 增員이 되는데, 누가 答辯을 해 줘야 되나, 事務處長 나오셨어요?

○委員長 金寅東; 누가 答辯을 하라고, 누가 할 거예요? 議案擔當官 나와서.....

○金炯奎 委員; 5級行政이 3名이 增員이 되는데, 5級 行政 3名은 어디어디에 增員配置할 것입니까?

○議案擔當官 張壽吉; 지금 5級 3名은, 1名은 지금 議長님의 隨行秘書官으로서 5級 行政職 1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名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議會機能 中에서 公報機能이 없기 때문에 公報室長으로서 5級 1名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1名은 議案總括係長으로서 1名이 策定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名이 3個 補職에 5級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金炯奎 委員; 아까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意見에서도 나왔지만 公報室 5級 行政의 職級이 상향조정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檢討意見이 있었지만 現實的으로 우리가 議會에 관한 弘報, 또 記者室 運營,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과연 꼭 公報室이 필요한가 이런 입장이 되겠고, 이 議會活動의 弘報라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與와 野의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입장에서 公報室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偏愛的이고 偏頗的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誇大宣傳的인 그런 弘報的인 그런 입장이 되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弘報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런 立場을 취하지, 公報室이라는 것이 신설을 하는데는 本委員은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弘報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결정된 사실에 대한 이런 問題를 有料로 發刊하고 있다고 하는, 지금 現在 말하자면 지금 議事課인지 잘 發行을 하고 있죠, 그러한 問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 않느냐,

그리고 記者室 運營問題도 과연 記者室 記者와 상대해 가지고 議會의 公報室長이, 또 公報室에 있는 勤務하는 職員이 과연 무슨 말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記者室을 運營하겠다는지도 무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圖書館 運營 및 管理, 지금 現在 그런 圖書館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고 이러는데, 이 公報室을 신설을 해서 비록 職級은 執行部와 차이가 있는 하향조정해서 됐다손 치더라도 굳이 이러한 不要不急한 이러한 실정에 있는 公報室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議會事務處에서 도대체 어떠한 발상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되겠고.

두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議長의 儀典隨行秘書 5급 행정 신설이라고 하는 문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발상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議員들은 議員補佐官 한 명도 지금 갖지를 못해서 議政活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議長이 과연 서울시의회에 무슨 일을, 어떠한 발전적인 일을 하는지 몰라도 秘書室長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秘書室長을 앉혀놓고 어디 議長 혼자 다니는 것은 아닌데, 議員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서 議政活動에 發展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隨行秘書다, 儀典秘書, 隨行秘書, 이것은 市民이 볼 때 크게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本委員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합니다.

다만, 議案總括係 新設에 대한 問題는 現實적으로 아마 폭주되는 議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등등에 관한 問題가 있어서

이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本委員이 생각하는 職員增員 8명에 관한 문제도 이 비고에 內務部 基準適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 內務部基準이 무엇이에요? 基準을 내놔보세요. 이 基準에 과연 합당한 이런 職員의 增員인지, 또 그 基準이 不合理한 基準에 맞추어서 議會의 機能을 보강한다고 하는 의미의 增員인지 여부를 봐야 되겠어요. 議案擔當官이 지금 答辯한다고 나왔는데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事務處長 불러서 빨리 提出해서 밝히고 이렇게 해서 會議 進行하도록..... 本委員의 意見を 마칩니다.

○委員長 金寅東; 金炯奎 委員의 發言에 대해서 우선 同意를 묻겠습니다. 同意가 있습니까?

○金炯奎 委員; 質疑했으니까 答辯을 받아야죠.

○林東奎 委員; 委員長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事務處設置條例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金炯奎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公報官 問題에 우리 서울시의회에 公報室을 둘 필요가 있느냐, 與野의 입장을 달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地方自治制가 30년만에 復活되어서 서울시의회가 생겼습니다만 그 동안에 議會에 언론쪽을 擔當할 部署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議會가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言論에 좋지 않은 쪽으로 비쳐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議會 議員들의 活動을 정확히 言論에도 알리고 또 그것을 專擔할 部署가 필요하다는 次元에서 內務部에 承認要請을 한 적이 있고.

두번째, 隨行秘書問題는 그렇습니다. 議長님을 제가 모시고 몇 번 行事に 다녀보았습니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의 議長이 隨行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어디를 다닙니다. 그

러면 秘書室長은 事務室을 지키고 앉아 있고 실제 의장님실을 보시면 民願人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서울시의회에 民願人이 찾아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전부 의장님실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民願人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民願人이나 손님을 대화할 수 있는 분이 秘書室長이고 隨行, 議長님이 어디에 行事라든지 또 어디 가실 때에는 뒤에서 隨行하는, 補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바로 우리 서울시의회 議長의 位相이 올라감으로써 우리 서울시 132명의 議員들의 位相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次元에서 제가 提案說明을 드렸습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寅東; 事務處側의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案擔當官 張壽吉; 제가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公報官 新設하게 된 동기는.....

○金炯奎 委員; 아니, 잠깐 계세요.

(「아니, 事務處長이 없어요?」 하는 委員 있음)

(「지금 市長님室에 불려가 계십니다」 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議會가 열렸는데 무슨 市長이야! 나쁜 버프장머리 발상을 가지고 있어..... 停會 提案합니다.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충실한 答辯을 받기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47分 會議中止)

(12時 33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寅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金箕英 委員; 委員長!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 金寅東; 네, 말씀하세요.

○金箕英 委員; 民主黨 金箕英 委員입니다.

어제 3월 3일자 朝鮮日報에 서울시의회는 黨政協議會처럼 市政協議會를 運營하기로 했다고 서울시의회 金寅東 委員長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委員들에게 한 마디 議論도 않고, 또 運營委員會에 이 問題를 上程한 적도 없습니다. 委員長 혼자 생각을 단독으로 決定을 해서 發表를 한다면 市議會가 무슨 필요가 있고, 또 運營委員會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 市議員을 어떤 諮問委員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차제에 委員長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과 사과를 하시고 會議를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金寅東; 金箕英 委員님 말씀에 答辯을 하겠습니다. 어제 新聞에 일부 나온 몇 가지는 지난번 우리들이 今年度에 적어도 서울시의회는 다른 市道의 議會보다는 位相을 좀 달리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적어도 基本運營計劃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의회는 정말로 質 높은 運營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지난번에 運營委員會에서 일단 業務計劃報告에 대해서 試案을 檢討를 하고 다음에 5人 小委員會에서 檢討를 한 다음에 常任委員長들 檢討를 끝나고 다음에 여기서 報告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 5人小委員會로서 우리 金炯奎 委員도 나오시고, 그래서 그 때 市政協議會라고 하는 하나의 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豫算編成過程에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던 것은 事前에 調整같은 것이라든지 委員會의 意見收斂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단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여러 가지 물의를 빚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 그림 이 圈域別로 우리 委員들이 전부 자기 豫算編成過程부터라도 여러 가지 豫算案에 대한 政策的인 배려를 해 주면서 執行部の 意見도 듣고 또 우리의 意見도 개진해서 이것을 조정을 하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小委員會에서도 檢討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金箕英 委員이 아마 자세한 內容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市政協議會 한 건만 가지고 記者室에 가서 릴리스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세미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청회, 또 이번 新聞에 일부 났습니다만 公聽會問題라든지 討論會問題들이 전체 포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릴리스 했는데, 이제 유독 몇 개 新聞에서는 市政協議會가 색다른 것이고, 지난번에 地下車道問題에 여러 가지 물의가 있고 하니까 이런 問題도 상당히 좋은 착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부각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問題에 대해서 事前에 5人 小委員會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해서 이것은 사과드릴 問題는 결코 아니고 저는 運營委員長으로서 적어도 이 서울시의회의 位相을 올리고 어떻게 하든지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基本運營計劃을 發表한 일부분에 불과했던 어떤 記事가 크게 난 것에 대해서 사과나 그런 의지는 없다고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金箕英 委員; 이것이 運營委員會 委員長 名義로 回覽을 돌렸는데 이러면 運營委員會에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上程을 해서 이런 問題를 協議會를 하겠다 하자, 討論을 해 가지고 좋다 했을 때에 이것을 發表를 했어야지, 回覽까지 다 돌려놓으면 우리 여기 運營委員會 委員들은 뭘니까, 그러



면?

○委員長 金寅東; 基本運營計劃을 지난번에 만들어 檢討를 할 때에 그런 協議過程을 거쳐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릴리스한 것하고 그것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運營委에 5人小委, 이 問題에 내가 들어있다 해서 내가 마치 市政協議會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타이틀이 되어 있는 이 事項을 論議했다 하고 지금 말씀을 하다보니까 내가 同僚 우리 소속된 民主黨 運營委員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분명히 市政協議會라고 하는 이런 못박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5人小委에서 우리들 공식적인 小委는 아닙니다만 5人小委에서 運營委 다섯 사람이 委員長 포함해서 서로 우리 市議會에 관한 問題를 의논하고 協議하자 그런 데에 合議했고 그런 데에서 세미나 말씀도 있고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市政協議會, 예를 들어서 執行部の 豫算編成權을 市議會의 審議權을 事前에 조화를 기하는 옛날 5共治下의, 6共治下의 일부분에 市政諮問委員會 같은, 區政諮問委員會 같은 이와 같은 市政協議會 발상을 5人小委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 보세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人小委에서 이와 같이 市政協議會라고 하는 큰 타이틀하에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우리 同僚 소속된 民主黨 委員들한테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本委員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市政協議會라고 하는 것은 마치 與黨에서 黨政協議會가 하면 하는 것이지, 왜 거기다 市議會를 끌고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與黨에서 事前에 豫算編成에 관여를 하든 말든 그것은

黨政協議會면 協議會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市議會를 執行部の 編成權과 議會議員의 豫算審議權을 침해하는 이런 사실에 대한 議會로 끌고 들어가는 基本發相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語不成說이다, 本委員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金寅東 委員長은 분명히 金箕英 委員이 議事進行으로 말하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사과의 뜻을 바로 전달하고 會議를 進行해 줄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寅東;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우리 市議會 여러 가지 南山제모습찾기問題라든지 地下道路 建設問題라든지, 그 밖에 豫算審議過程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事前..... 여기서 녹음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說明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審議過程 中에서 우리 議會가 소외되고 또 나중에는 급기야 여러 가지 그런 豫算編成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여운도 남겼던 이런 問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圈域別로 충분하게 여러 가지 地域의 懸案問題라든지, 비단 豫算만 지금 강조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서울시의 懸案問題 등을 권역별로 處理해야 되는 問題들은 事前에 우리가 충분하게 시하고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어떤 들러리라든지 그런 뜻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본뜻이 잘못 이해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된지는 모릅니다만 이 問題는 적어도 저로서는 우리 委員들 전부 마찬가지입니다만 市議會의 議政活動의 活性化를 위하는 이러한 견지에서도 시에 事前調整協議라고 하는 것은 우리 地方

自治發展을 위한 체크 앤드 밸런스의 기본원리에도 妥當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합의에 의해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이 問題를 發表하기 전에 여러 委員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는 問題에 대해서는 제가 正중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뜻은 議會의 기능의 活性化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金炯奎 委員; 한 말씀 거기에 意見 添附하겠습니다. 市政協 議會가 議會의 活性和 이러한 견지에서 꼭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議會에서 豫算編成權이나 다른 問題를 干여를 해 가지고 調整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발상이 틀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絶對多數인 與黨이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審議를 제대로 못하고, 數에 눌러서 제대로 얘기하는 野黨議員 수렴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 豫算案도 다소 소란하고 協議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도 났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政府도 政務長官制度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政務長官이 國會議員에게, 所管常任委員長에게, 所管委員에게 자세히 議案에 대한 說明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올바른 執行部の 의사를 전달해서 議會에서 통과하도록 決定이 되도록 이런 데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執行部 市廳에서는 잠자고 있는데 議會에서 오히려 執行部の 원활한 사정과 執行部の 豫算編成權과 여기에 도와주려고 하는 議會의 議員의 審議權이라는 것은 내팽개쳐 버리고 執行부에 협작하는 이러한 작태의 市政, 이런 協議會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議會議員의 自尊과 位相에 관해서 이번 金寅東 委員長께서는 중차대한 이러한 問題를 야기시켰다고 하는 책임이 느

껴지지 않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 添言합니다.

○朴禧柱 委員; 지금 우리 金箕英 委員님의 말씀이든가 또 우리 委員長께서 충분히 먼저 상의 안했던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했으니까 이것으로써 끝내고 本 案件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同意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金寅東; 아까 金炯奎 委員께서 事務處長에게 質疑하신 內容이 있습니다. 事務處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申星浩; 事務處長입니다. 이번에 저희 事務處의 職制 일부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事務處의 人力에 대해서, 당초에 策定을 할 때 議會運營을 해 보지 않고 執行部에서 人力을 策定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事務處에 대한 인력판단을 해 본 결과 內務部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에다가 增員을 해야 될 必要性이 있다 이렇게 해서 增員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그 중에서 7명을 增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명의 人力을 增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 동안에 運營을 해 본 결과 職員만 확보를 7명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管理를 效率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內容을 조금 7명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職制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째, 公報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公報室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議會가 활동한 만큼 弘報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 만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部分도 있고, 실지로 內容이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資料라든지 人力關係로 해

서 내용이 사실대로 報道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러한 公報室 機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公報室을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市民新聞이 있습니다. 이 시민신문이 4면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그 4면 중에 한 면을 우리 議會의 活動事項을 報道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으로 되어 가지고 이번 發行新聞부터 둘째면에 議會活動事項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問題도 있고 많은 人力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管理機能으로서의 公報室,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公報室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改正案에다가 이것을 計上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의장님 비서실에 또 직원 하나를 증원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의장님실에 지금 비서실장이 하나 있고 그 밑에 차를 나르는 여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 뒷바라지를 하는데 비서실장 한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축사라든지 행사관계라든지 또 외부연락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대단히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짠 직원이 수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보좌하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위 수행도 하고 내부에서 그러한 업무도 수행을 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직원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5급 직원 하나를 넣었습니다. 실은 내무부에서 올 때는 6·7급, 그러니까 주사급으로 이것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시장님도 수행비서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춘다는 이러한 뜻에서 거기다가 5급 직원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7급의 주사급 중에서 숫

자는 변동하지 않고 5급을 3명 정도 하고 주사급을 4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숫자는 변동없이 해서 첫째는 공보실, 둘째는 의장님실, 또 셋째는 우리 의안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맡아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3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하는 이런 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총괄계가 앞으로는 특위관계 이것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리기능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더 효과적인 직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金炯奎 委員; 金炯奎 委員입니다. 아까 제가 質問하는 자리에 事務處長이 계시지 않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答辯 중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不在한 사유가 市長한테 가서 무슨 報告를 하셨는지 뭘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議會事務處長이라고 한다면 議會 議長도 마찬가지입니다. 議會가 가동했을 때는 議長이나 事務處長은 반드시 누구보다도 자리를 지켜야 될 그런 위치의 職務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運營委에, 더더구나 事務處 設置에 관한, 定員에 관한 問題 이런 것이 繫留되어 있는 이 運營委 회의에서 市長한테 갔다고 하는 것은 本委員 생각으로서는 事務處長으로서 대단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事務處長이 말씀해 주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事務處長 意見を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계시지 않을 때 제가 質問했었던 이 8名이라고 하는 職員 定員의 內務部 基準適用이다 이렇게 했는데 內務部 基準適用에 대한 그것을 提出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內務部基準이 합

당한 것인지, 또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舉手機 노릇으로서 거기에 맞추어서, 구미에 맞추어서 하는 일인 것인지 우선 그것부터 판단하고, 아까 專門委員이나 事務處의 議案課長이나 또 事務處長이 說明한 바에 의하면 이 人員은 適材適所하게 잘 配定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內務部基準을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內務部基準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處長 申星浩; 會議 시작한 그 시간까지는 제가 事務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잠깐 業務協議次 다녀가라고 그래서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잠깐 비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內務部에서 公報室이.....

○金炯奎 委員;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業務協議하면 議會中에도 갈 것이냐 이거야.....

○事務處長 申星浩; 앞으로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內務部基準은 內務部가 꼭 公報室이다, 또 議長室의 職員이다, 이렇게 內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숫자로 봐 가지고 이 숫자가 우리로서도 필요하다고 建議를 했고 內務部도 인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니까 어느 일에 몇 명이다 이렇게 해서 人力을 算定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 事務處 職員들이 부족해서 우리 委員님들의 補佐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內務部도 이해를 하고 또 각 시·도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때 같이 一括적으로 각 시·도에 人員配定을 해준 것입니다.

○金炯奎 委員; 事務處長께서 제가 얘기하는 本意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內務部の 基準이 과연 무엇이나, 예를 들자면 8명 增員하는데 定員을 內務部長官한테 承認을 맡는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필요한 人員을 內務部長官한테 承認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內務部の 基準이 일괄해서 示達이 되어 가지고 너희들이 필요하는 定員은 이런 基準에 맞추어서 增員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事務處長 申星浩; 內務部基準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金炯奎 委員; 그러니까 꼭 필요한 人員이란 말이지요? 필요한 그런 人員의 增員을 要請하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우리가 여기서 定員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議會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서울시 전체 숫자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에 대한 TO가 있으면 그 중에서 주면 됩니다만 서울시가 없을 때는 서울시가 內務부에다가 그 숫자만큼 增員要請을 하도록 그렇게 서울시규칙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增員한 것은 서울시 TO내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준 것은 內務部에서 서울시 전체 정원에다가 더 플러스를 해서 준 숫자입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內務部基準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서울시의 정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議會에 割愛할 수 있으면 割愛가 되고, 그 定員 外에 增員이 될 때는 서울시장이 內務部長官한테 報告해서 承認이 떨어지면 市長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서울시의 人力은 算出基準이 있습니다. 전체 서울시의 人口數에 비례한 어떠한 算出基準이 있는데.....

○金炯奎 委員; 아니, 그 基準보다도 내가 얘기한 것이 맞느



나, 틀리느냐 그것만 答辯해 주세요.

○事務處長 申星浩; 우리 議會의 算出基準은 이것이 文書的으로 計算할 수 없는 그런 人力이 많이 들어갑니다.

○金炯奎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내무부의 基準이 없고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人員이 定員 內에 缺員이 있을 때는 그 缺員을 채우기 위해서 定員에 充당해서 서울시장이 任命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議會에서 필요로 하는 人員도 그 서울시 집행부에 遊休人員이 있으면 議會에다가 補強을 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면 언제 서울시 정원 외에 議會에서 필요로 하는 人員을 增員하려면 서울시가 內務部에 報告를 해서 增員要請을 해서, 定員要請을 해서 承認을 받으면 議會에서 이것이 增員이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네, 그렇습니다.

○金炯奎 委員; 그러면 분명히 事務處長이 그렇다고 한다면 議會에, 서울시의회를 總括하고 있는, 事務를 總括하고 있는 事務處長으로서 議會의 議員을 補佐하는 補佐官이 實質적으로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봐서.....

○事務處長 申星浩; 그것은 우리 事務室 管理機能하고는 별개의 人員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議員補佐官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金炯奎 委員; 事務處長의 개인적인 意思의 判斷을 하라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개인적인 意思를 여기서 發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운영하는 管理機能으로서의 人力은 저희가 判斷해서 答辯할 수가 있지만 議員補佐官은 어디까지나 議員님들 개개인에 대한 人力需給이기 때문에 제가 判斷할 性質은 아니라고 봅니다.

○金炯奎 委員; 그 참 말씀이 좋은 얘기인데…….

(「發言權 주세요」 하는 委員 있음)

發言 도중에 무슨 發言權입니까? 아니, 補充은 제 얘기를 끝내고…….

그래서 本委員은 事務處長 말씀따라나 事務에 대한 管理立場에서는 事務處長이 필요한 人員은 이렇게 시하고 調整해서 하고, 議員들 신분에 따르는 개개인의 補佐官問題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런 立場이라고 한다면 참 다행스럽게도 아주 事務處長다운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一括的으로 議員과 事務處는 항상 동일한 位置에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야 議政活動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의 議員補佐官 필요성 여부를 記述해서 서울시장에게 전달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아까 말과 같이, 內務部長官이 承認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結論부터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그것은 公式會議가 끝난 뒤에 個別的으로 個人意見이기 때문에 그것은 別途로…….

○金炯奎 委員; 會議에요, 會議, 비공식이 있을 것까지 없어요. 아까 말하는 議長 儀典隨行秘書, 이것은 公式的인 會議보다도 정말 인간적인 政治道義上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議會를 이와 같이 진행, 運營한다고 하는 이런 견지에서 저에게는 公式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非公式的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公式的으로 事務處長 얘기하세요.

○事務處長 申星浩; 제가 判斷할 수 있는 人力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議會 운영에 대한 人力을 판단을 해야지, 그 問題는 제가 判斷하기에는 조금 時間的 여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趙文晉 委員; 지금 事務處長님 말씀하신 議會運營에 필요한 職員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실 수 있다 그랬는데, 議會運營을 필요로 하는 事務處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서울시의회의 事務處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의원님들 補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趙文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의회가 議政活動을 하는데 필요한 業務를 支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 중에 議員님의 活動을 補佐하고 議員님의 活動의 영역을 높이기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을 위해서 서울市議會事務處가 있을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 서울시 의원이 補佐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公式席上이라고 해서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地方自治法 제83조 보게 되면 서울시의회사무처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任用規定은 제103조에 보게 되면 서울시장이 건의해 가지고서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맞물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TO가 없는 상태에서 빼냈다, 이것 빼낸 것은 누가 빼냈느냐 하면 議會事務處에서 建議를 했고 서울시장이 內務部長官에 建議해 가지고 이번에 7명 TO를 받아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네.

○趙文晉 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職員이 필요하기 때문에 建議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職員 中에서는 議長의 5級 隨行秘書官까지도 필요하다고 한 것 아닙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그렇게 具體的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趙文晉 委員; 안 돼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우리 會議를 補佐해 주고 地方化時代에 따라서 서울시의회가 自治化를 活性化시키려면 事務處에서 필요한 人員이 필요하다, 委員들을 補佐하려면, 서울시라든가 建議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지, 현재 行政府나 모든 事務處에서까지도 서울시 地方議會가 구성됨으로 해서 行政府의 牽制機能으로서 생각하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基礎議會가 發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使命感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事務局長職이 事務處長으로 우리가 이번에 條例改正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事務處長이 됨으로 해서 職級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것이죠? 이것은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냐하면 事務局이 서울시에 그야말로 1급, 2급 할 것 없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2급 事務局長으로서는 우리 議會를 保護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事務處長으로 級을 올리고 이렇게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事務處에서도 우리 委員들의 活動에 制限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도저히 우리 委員들이 市民의 발이 되고 民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또 한 가지 豫算審議, 條例 등등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할 것 같으면 강력히 建議해서, 시 政府에 建議해 가지고 議員들이 꼭 필요

한 事項이니까 이것은 해결해야겠다, 建議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個人的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 해야 됩니다 해 놓고서 우선 막상 법 制度上에 問題가 되게 되면 지금 內閣制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거든요. 이것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 서울시의회를 지키고 있는 事務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걸으로는 이웃에 있습니다만 결국은 가면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을 金炯奎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同感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個人的인 이 公式席上이라고 할지라도 내 個人 所見으로써는 꼭 필요하다, 아니다만 하면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議會事務局에서는 이 意見은 관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事務局長으로서 議員들이 補佐官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야말로 合理的인 議會活動을 할 수 있다, 議員活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個人所見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예요. 그것 듣고 합시다.

○孫允準 委員; 이제 그만 합시다.

○趙文晉 委員; 듣고 해요. 그것 말씀해 주세요.

○事務局長 申星浩; 이것은 公式會議니까 個人的인 意見은 이會議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趙文晉 委員;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質疑를 하자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요.

○孫允準 委員; 事務局長님, 孫允準 委員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事務局長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번 합시다.

○趙文晉 委員; 제가 끝난 다음에 해요. 이번에 大統領 서울 시 巡視 나오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議長 포함 常任委員長 1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서울시에서 TO 몇 명 參席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서 몇 명을 參席해야 되느냐 建議해서 내려왔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事務處長 申星浩; 그쪽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趙文晉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事務處長님으로서 생각하실 적에는 서울시의회 議員 132명 중에서 常任委員長 이상 10명만 參席하게 되면 서울시의회 議員들의 位相이 定立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事務處長 申星浩; 그것은 行事主催가 市니까 行事主催側에서 거기 여러 가지 行事와 관련해서 합당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曰可曰否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趙文晉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事務處가 서울시와 서울시 行政府와 서울시의회 즉, 議會의 일을, 業務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서울시 行政府와 서울시의회의 중간 입장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입장정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느냐 하는 얘기죠. 答辯 못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제 質問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孫允準 委員; 孫允準 委員입니다. 지금 事務處長에게 一問一答하는 監査도 아니고 聽聞會도 아니니까 會議順序대로 進行을 하시고, 또 個人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事務處長님께서 우리 議員들을 補佐하는데 補佐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個人的으로 볼 때 있어야 하고 또 나도 그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答辯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구태여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事務處長 申星浩; 제가 個人的으로 만났을 때는 제 나름대로 意見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孫允準 委員;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答辯 끝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監査하는 것도 아니고 聽聞會 하는 것도 아니니까 委員長님이 會議 進行順序대로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寅東;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여러 委員님들, 오늘 우리 議案外에 여러 가지 懸案이 있었던 問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質疑와 討論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提案說明에 대한, 또 檢討報告에 대한 여러 가지 意見 충분히 收斂되었다고 보고 일단 質疑 討論이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議事日程 제4항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제5항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또 議事日程 제6항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一括해서 原案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전부 可決되었음을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議員報酬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委員長 金寅東;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以上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12分 散會)

---

○出席委員

金寅東 林東奎 金炯奎

孫允準 趙文晋 韓瑞奎

朴禧柱 孟今龍 廉東秀

郭壽榮 曹相彩 金箕英

○專門委員

梁在大

○出席公務員

서울特別市議會

事務處長 申星浩

議政課長 延營熙

議事課長 朴命鉉

議案課長 張壽吉